



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

건설교통부

1. 추진 배경

-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.7.1 부터 경유·LPG에 부과되는 교통세·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,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(2000.9.7. 에너지세제 개편안 당정협의)
- 이에 따라 2001년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마련(2000.12 지방세법 개정)
- 2001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한 유류소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

· 예산규모: 버스(408억원), 택시(789억원)

2. 추진 경위

- 유류세율 조정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세법(경유) 및 특별소비세법(경유·부탄), 지방세법(주행세율) 개정('00.12)
-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수요액 파악('00.12~'01.2)
- 보조금 예산 확정액을 행정자치부에 통보('01.4.10)
- 보조금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 단체 협의회 개최('01.4)

- 시·도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회 개최('01.4~5)

※ 법인택시중 명의이용금지위반(지입제 경영)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3. 보조금 지급 방안

① 추진방향

-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
- 보조금 지급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지급절차를 최대한 단순화
- 2001년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시·군별로 안분된 보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

② 보조금 지급 주체

- 운송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시·군에서 보조금 지급
 -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업무와 관련, 조례를 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자 단체의 협조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

③ 보조금 지급 대상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중
 - 버스 : 시내·시외·고속·농어촌·마을버스
 - 택시 : 법인·개인택시

④ 보조금 지급 시기

-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무 전산화 등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단축 조정 시행할 수 있음

- 운송사업자는 3개월 사용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사용량 확인등을 한 후 보조금을 지급

- 여객: 3개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0일 까지 보조금 신청하고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급

※ 지급기간 : '01.12~'02.2, '02.3~5, '02.6~8, '02.9~11

- 금년에 한하여 여객은 7~9월, 10~11월 2회로 분할 지급

- 2001.12월분은 2002년 예산에 편성하여 2002년도에 지급

⑤ 보조금 지급 기준

《 버스 》

- 인·면허(등록)노선 운행에 따른 실제 유류사용량에 추가 유류세율인상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

- 유류사용량은 주유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(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), 신용카드 매출전표(유류주입량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·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)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

- ※ 금전등록기상 영수증,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

- ※ 2001 유류세율 인상액(경유 1 당)
 - 시내·시외·농어촌·마을버스 : 55.88원
 - 고속버스 : 50.8원

《 택 시 》

- 보조금은 실유류사용량에 추가 유류세율 인상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

- 유류사용량은 주유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(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), 신용카드 매출전표(유류주입량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·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)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

- ※ 금전등록기상 영수증,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

- ※ 2001 유류세율인상액
 - LPG (1 당) : 64.2원, 경유 : 50.8원

⑥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방법

《버스, 택시》

-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(여객 부문)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보조금 지급 신청

- 관할 관청은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적정성 여부등을 확인하여 운송사업자별 보조금을 확정

- 매 회계연도 보조금 정산결과 시·군별로 확정 배분된 보조금 예산의 과·부족이 발생한 경우

- 보조금 예산액 부족시에는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안분 하여 보조금을 산정 지급하고, 차년도 예산에 반영
- 보조금 예산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년도 당해 목적의 보조금으로 이월 사용

- 관할 관청은 계좌 송금을 통해 보조금 지급

⑦ 기 타

【 휴·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시 】

-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

- 최종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지급

-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중 휴·폐지를 한 경우

-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사

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

- 양도·양수시에는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을 신청

【 사후관리방안 】

-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강화방안 마련 시행
 -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중지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, 각종 재정지원 중단
 -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
- 보조금 지급을 세금신고와 연계하므로서 유류사용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, 관계자 요청시 공개·열람 조치
 -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,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부정사용 방지
 -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내역을 관할 지방국세청에 통보

4. 행정사항

- 사업자 단체 및 보조금 지급 관청의 상급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관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
- 별첨 서식의 『보조금 지급 신청서』를 각 운송사업 협회에 배부하고 시·군청에도 비치(지방자치단체)

- 보조금 지급 관청(시·군)은 보조금 지급 전에 운송수단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·관리하여 운송사업자의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방지

- 법인택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공정·투명하게 관리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-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계획(특히 보조금 신청일자) 및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보조금 신청시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서류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(지방자치단체, 사업자 단체)

- 보조금 지급업무의 신속성과 유류사용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 세금계산서 활용 등 보조금 지급사무 전산화 적극 추진

운수업계보조금지침 보완사항

-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(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)에 의거 1개월단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사용이 가능함. 다만, 택시운송사업자의 일별 유류공급거래내역(품명, 수량, 단가, 차량번호 또는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)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(공급자 확인·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)이 첨부되어야 함.